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3.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8월 28일 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6년 09월 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2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행정위원회(2006.9.8)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가. 개정이유

- 자치단체의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원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9567호)이 2006.6.29일자로 공포되어 2006.7.1일부터 시행되었기에 동 규정에 맞게 우리구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 근거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제1조 본문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삭제(사용료 규정)
 - 제6조중 법령명 수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3조 별표 중
 - 나목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 (1) 지방세납세증명과 (3)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 액을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
 - 다목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중
 - (2)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 주택가격 확인서의 수수료 액을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다. 참고사항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김완섭)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2006년 6월 29일 제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동 규정에 맞게 우리구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법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 지방세납세증명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 상위 근거법령 개정사항과 관련 용어를 조정하였으며 다만, 개정안 제6조에 수급권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같은 법 “제5조”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한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요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등 증명 발급 수수료 액을 행자부에서 공포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중 관련 법령의 적용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령의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였음.

나. 수정 주요골자

(안) 제6조 제1항 제2호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고, 제3호중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으로 수정

5. 審査結果：修正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호
----------	----------

제안년월일 : 2006. 9. 8.

제안자 :윤준용위원외1인

1. 수정 이유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액을 행자부에서 공포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 중 관련 법령의 적용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령의 띄어쓰기를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골자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2호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고,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으로 수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2호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하고, 제3호중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을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으로 수정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 략) 1. (생 략) 2. <u>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u>에 의 한 생활 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 는 증명 3. <u>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u>의 규정 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 증명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 음) 1. (현행과 같음) 2. 「<u>국민기초 생활보장법</u>」 제5조제1 항 및 「<u>같은법 부칙</u>」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u>보호대상자</u>----- 3. 「<u>문화재보호법시행령</u>」 ----- -----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u>수급권자</u> ----- 3. 「<u>문화재보호법</u>」 <u>시행령</u>」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
----------	---

제출년월일 : 2006. 8. 28.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자치단체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원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2006.6.29일자로 공포되어 2006.7.1일부터 시행되었기에 동 규정에 맞게 우리구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근거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삭제(사용료 규정)
- 제6조중 법령명 수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제3조 별표중

- 나목.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1.지방세납세증명 3.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액을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 다목. 건축 및 주택에 관한사항 중
2.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수수료액을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비예산

나. 입법예고(2006. 8. 3 ~ 2006. 8. 22)결과 : 의견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30조”로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제1항제2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을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5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을 “「문화재보호법시행령」”으로 한다.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나목중 (1) 지방세납세증명 1건 발급 수수료액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1개년 발급 수수료액“500원”을 800원으로 하며, 다목중 (2)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개년 1호 발급 수수료액 “500원”을 “8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u>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방자치법</u> 」 제128조 · <u>제130조</u> ----- ----- -----.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생략)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u> 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2. 「 <u>국민기초 생활보장법</u> 」 제5조제1항 및 「 <u>같은법 부칙</u> 」 제5조 -----																																																
3. <u>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u> 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3 「 <u>문화재보호법시행령</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u>17종</u>)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u>17종</u>)																																																
<table><tr><th>종목</th><th>단위</th><th>수수료</th></tr><tr><td>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td><td></td><td></td></tr><tr><td>(1)지방세납세증명</td><td>1건</td><td><u>500</u></td></tr><tr><td>(2)(생략)</td><td>(생략)</td><td>(생략)</td></tr><tr><td>(3)개별공시지가 확인서</td><td>1필지 1개년</td><td><u>500</u></td></tr><tr><td>다.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td><td>(생략)</td><td>(생략)</td></tr><tr><td>(1) (생략)</td><td>1개년 1호</td><td><u>500</u></td></tr><tr><td>(2)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td><td></td><td></td></tr></table>	종목	단위	수수료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지방세납세증명	1건	<u>500</u>	(2)(생략)	(생략)	(생략)	(3)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1개년	<u>500</u>	다.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생략)	(생략)	(1) (생략)	1개년 1호	<u>500</u>	(2)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table><tr><th>종목</th><th>단위</th><th>수수료</th></tr><tr><td>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td><td></td><td></td></tr><tr><td>(1)지방세납세증명</td><td>(현행과 같음)</td><td><u>800</u></td></tr><tr><td>(2)(생략)</td><td>(현행과 같음)</td><td><u>800</u></td></tr><tr><td>(3)개별공시지가 확인서</td><td>(현행과 같음)</td><td></td></tr><tr><td>다.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td><td></td><td></td></tr><tr><td>(1) (생략)</td><td>(현행과 같음)</td><td><u>800</u></td></tr><tr><td>(2)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td><td></td><td></td></tr></table>	종목	단위	수수료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지방세납세증명	(현행과 같음)	<u>800</u>	(2)(생략)	(현행과 같음)	<u>800</u>	(3)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현행과 같음)		다.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생략)	(현행과 같음)	<u>800</u>	(2)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종목	단위	수수료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지방세납세증명	1건	<u>500</u>																																															
(2)(생략)	(생략)	(생략)																																															
(3)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1개년	<u>500</u>																																															
다.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생략)	(생략)																																															
(1) (생략)	1개년 1호	<u>500</u>																																															
(2)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종목	단위	수수료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지방세납세증명	(현행과 같음)	<u>800</u>																																															
(2)(생략)	(현행과 같음)	<u>800</u>																																															
(3)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현행과 같음)																																																
다.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생략)	(현행과 같음)	<u>800</u>																																															
(2)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